

2024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

(2024년 1월 기준)

(단위 : 원)

분 류 [인건비 지급비율]		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 등급
재가급여 월 한도액			2,069,900	1,869,600	1,455,800	1,341,800	1,151,600	643,700
방문요양 (방문당) [87.1%]	30분이상		16,630					이용 불가
	60분이상		24,120					
	90분이상		32,510					
	120분 이상		41,380					
	150분 이상		48,250					
	180분 이상		54,320					
	210분 이상		60,530					
	240분 이상		66,770					
방문목욕 (방문당) [49.8%]	방문목욕 차량(차량내 목욕)		84,670					이용 불가
	방문목욕 차량(가정내 목욕)		76,340					
	방문목욕 차량 미이용		47,670					
방문간호 (방문당) [60.4%]	15분 이상~30분 미만		40,760					이용 불가
	30분 이상~60분 미만		51,110					
	60분 이상		61,490					
주.야간 보호 (1일당) [48.7%]	3시간 이상~6시간 미만		39,810	36,850	34,020	32,470	30,920	30,920
	6시간 이상~8시간 미만		53,360	49,420	45,620	44,070	42,500	42,500
	8시간 이상~10시간 미만		66,360	61,480	56,760	55,210	53,640	53,640
	10시간 이상~13시간 이하		73,110	67,720	65,570	61,000	59,450	
	13시간 초과		78,400	72,630	67,100	65,540	63,990	
단기보호 (1일당) [59.0%]	12시간 이상 100% 12시간 미만 50%		70,500	65,280	60,310	58,720	57,110	이용 불가
복지용구 1년 한도액			1,600,000					
시설 급여	노인요양시설 [61.1%]	요양보호사 2.3명당 1명 이상	84,240	78,150	73,800	4,5등급 수급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3등급 급여비용 산정		이용 불가
	공동생활가정 [65.4%]		71,010	65,890	60,740			
방문간호 지시서	「의료법」상 의료기관 (보건의료원 포함)	대상자가 의료기관 방문	21,860					
		의사가 가정을 방문	68,970					
	「지역보건법」상 보건소 및 보건지소	대상자가 의료기관 방문	5,930					
		의사가 가정을 방문	12,790					
의사 소견서	의료법상 의료기관 (보건의료원 포함)		52,870				(치매진단) 25,520	
	지역보건법 상 보건소 및 보건지소		49,300				(치매진단) 21,980	